



보도자료

힘내라-대주정복 힘내라-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3월 26일(목)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0년 3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583)

방송 · 인터넷 매체는 3월 26일(목) 낮 12시

담당: 김중호 사무관(044-200-4584)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별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공정위·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2019년 12월 16일) 내용을 반영함.

- ①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 ② 별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별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 ③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 ④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활성화(안 §9조의2③항2호, 현행 §9조의2④항·⑤항 삭제)

- 현행 법령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 16조의2②항)
 - 신청 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 기간을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 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 § 9조의2③항)
- 그러나,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 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34.6%)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함. (조정 신청 경험이 있는 911개 수급 사업자 중 8개만 조합을 활용)
 -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제외됨에 따라 신청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하고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벌점 제도 개선

1) 벌점 경감 사유 및 경감폭 조정·정비(안 [별표3] 3.가.1)·가, 현행 [별표3] 3.가.2)·3)·5) 삭제)

- 현행 법령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한 후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 § 26조)
 - * 경고 0.5점, 시정 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부과(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유용, 보복 행위는 과징금 2.6점, 고발 5.1점)

-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 별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별표3)
 - 그러나, 별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전자 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별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었다.
- *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경감받을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 별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 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관련 경감 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

* (현행) 사용 비율 100% 2점 → (개정) 80% 이상 2점, 50% 이상 ~ 80% 미만 1점

** (현행) 사업자 간 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시 각각 0.5점 → (개정)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 대금의 50% 이상 1점, 50% 미만 0.5점

2) 피해 구제 등 관련 별점 경감 사유 신설(안 [별표3] 3.가.3)·5)·6)·8))

-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를 조치하더라도 수급 사업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중소기업 대상)* 선정 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현금 결제 비율이 100%일 것, 최근 3년간 법 위반이 없을 것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 수립 여부,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에게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또한, 건설 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입찰 종료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도급 업체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현행 하도급법(§4조②항7호)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하여 **별점 경감 사유를 신설**했다.

-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 수급 사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해당 사건 별점의 25%~50%, 피해를 50%이상 구제하면 별점의 2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경감 비율은 피해 구제의 규모,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우수 업체는 최대 2점*, 경쟁 입찰 결과(최저 입찰 금액, 낙찰 금액)를 공개 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 최우수(AAA) 등급에 대해 2점, 우수(AA) 등급에 대해 1점 경감

** 입찰 정보 공개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1점, 50% 이상 ~ 80% 미만인 경우 0.5점 경감

< 별점 경감 사유 개선 요약 >

연번	경감사유	최대 경감점수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1	표준계약서 사용 우수	2	2	경감요건 완화
2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우수	1	1	현행유지
3	건설하도급 입찰시 입찰정보공개 우수	-	1	신설
4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업체	3	3	현행유지
5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중소기업 대상)	-	3	신설
6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우수업체	-	2	신설
7	사업자간 합의를 통한 직불	0.5	1	경감항목 통합, 경감폭 확대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0.5		
8	수급사업자 피해를 구제	-	별점의 50%	신설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0.5	-	삭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표창 수상	2		삭제
	하도급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비율 우수	0.5		삭제

3) 벌점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3] 3.가·다)

-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이원화*하고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여 누적 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 * ‘사건 인지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시정 조치일 직전 1년’
 - **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등 요청 제도와 달리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의 경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벌점 합산 시 제외하도록 규정(법§25의4)
- 공정위가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또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제도(원스트라이크 아웃)와 관련하여, 부과 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도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벌점 경감 사유 판단 시점을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 또한,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 4개 행위를 고발할 때 부과하는 벌점을 5.1점 → 3.1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안 §2조④항)

- 현행 시행령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 해당 기준이 1997년(제조·수리) 또는 2005년(건설)에 정해진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2002년 24.9억 → 2017년 43.3억
(GDP디플레이터) 2002년 76.9 → 2018년 104.7
-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 위탁은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은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라. 관계 부처 간 협력 활성화(안 § 17조의2)

□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및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를 운영해 왔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 국토부, 중기부, 조달청, 금융위 등이 관련 평가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주거나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공정위가 관계 행정 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② 관계 행정 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관계 행정 기관이 조치 내역을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했다.

2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하도급 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② 별점 경감 기준을 정비하여 별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며,

③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하도급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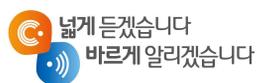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656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생략)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 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u>대차대조표</u> 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② ----- ----- ----- ----- <u>재무상태표</u> 에 ----- ----- ----- <u>재무</u> <u>상태표</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 ----- ----- -----.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u>20억원</u> 미만인 중소기업자	1. ----- ----- <u>30억원</u> -----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u>30억원</u> 미만인 중소기업자	2. ----- -- <u>45억원</u> -----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서면 기재사항) (현행과 같음)
6. <u>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u>	6. <u>하도급대금</u> ----- -----

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생략)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생략)

<신 설>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6조(서류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7. -----

하도급대금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6. -----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 의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 자”란 원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 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 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 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 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총액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자

④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 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 상 경과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해 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 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9조의2(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 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삭 제>

<삭 제>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
합은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
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
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
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
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
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
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
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
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
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
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
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신 설>

제17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
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에게 모범적으로 하도급거래를 하
고 있는 사업자(법 제3조의3에 따
라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한 평가

를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등의 명단을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지받은 관
계 행정기관은 해당 사업자를 지
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
인 조치의 내용 등 반기별 조치
내역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
야 한다.

[별표 3]

1. 용어의 뜻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
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
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
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하고, “결제액”이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
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결제액을 말한
다.

바. “전자입찰비율”은 충하도급
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
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

[별표 3]

1. 용어의 뜻

마. -----

말한다.

<삭 제>

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개시일) 또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신 설>

사. “직권조사 개시일“이란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

2. 별점의 부과기준

가. 별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3항제1호,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 점으로 한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 낙찰금액)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건의 비율을 말한다.

<삭 제>

2. 별점의 부과기준

가. (현행과 같음)

7) -----

----- 3.1
점으로 ----

3. 별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별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하도급거래에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점

3. 별점의 경감·가중 및 누산기준
가. -----

-- 같으며, 경감기준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의 시정조치일(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하며, 이하 “최근 시정조치일” 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8) 충족여부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각 사건별료(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 위반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원사업자가 -----
----- 사용
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수급사업자에게 뚜렷하게 불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최신 개정본을 배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최신 개정본을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별점을 경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제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4) 현금결제 우수업체인 경우

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한 비중이 80% 이상: 2점

나)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한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 1점

<삭 제>

<삭 제>

-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5)에 따라

- 가) 현금결제비율 100%: 1점
- 나) 현금결제비율 80% 이상 100% 미만: 0.5점

5) 전자입찰비율이 80% 이상인 업체인 경우: 0.5점

<신 설>

- 6)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 수급사업자 또는 협력사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 가) 최우수: 3점
 - 나) 우수: 2점
 - 다) 양호: 1점

<신 설>

<신 설>

별점을 경감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가) -----
- 나) -----
-

<삭 제>

- 3) 원사업자가 법 제2조제9항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고, 입찰정보공개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가) 입찰정보공개비율 80% 이상: 1점
 - 나) 입찰정보공개비율 50% 이상 80% 미만: 0.5점

- 4) ----- 대기업이 법 제3조의3에 따라 -----
- 실시한 -----
- 가) -----
 - 나) -----
 - 다) -----

5)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하도급거래 평가에서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법 제3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3점

6)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 7) 원사업자가 별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 8) 원사업자가 별점 부과일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0.5점

<신 설>

실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에서 우수 등급(AA) 이상을 받은 경우
 가) 최우수(AAA): 2점
 나) 우수(AA) : 1점

<삭 제>

- 7)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
 -----경우
 가)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1점
 나) 원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대금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0.5점
-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구제 규모가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
목의 항목마다 1회만 별점을 경
감할 수 있다.

고려하여 경감 비율을 결정하
며, 제2호가목에 따라 반영한
가장 중한 시정조치가 같은 목
1)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 해
당 별점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100분의
25 초과 100분의 50 이내

나)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
한 것은 아니지만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별점의
100분의 25 이내

다 .

-----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별점
을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
에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이
루어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별점

3)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영업
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법 제26
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영업

<신 설>

정지 요청에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별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점의 부과기준의 소급효)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이 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별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자가 이수한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 사업자가 실시한 전자입찰에 대한 별점의 경감기준의 적용은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